

[ ] 형식승인기관

[ ] 검정기관

[ ] 자체검정사업자

[ ] 자체정기검사사업자

[ ] 적합성확인기관

지정사항 변경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|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|----|
| 접수번호         |        | 접수일      |  | 처리기간              | 7일 |
| 신청인          | 업체명    | 성명(대표자)  |  |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| 본사 주소  | 본사 전화번호  |  | 본사 팩스번호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| 사업장 주소 | 사업장 전화번호 |  | 사업장 팩스번호          |    |
| 변경사항<br>및 사유 | 변경된 사항 |          |  | 지정사항 변경일<br>년 월 일 |    |
|              | 변경사유   |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|    |

「계량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4항·제26조제5항·제32조제3항·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·제26조제3항·제31조제2항·제39조제3항에 따라 ([ ] 형식승인기관, [ ] 검정기관, [ ] 자체검정사업자, [ ] 자체정기검사사업자, [ ] 적합성확인기관) 지정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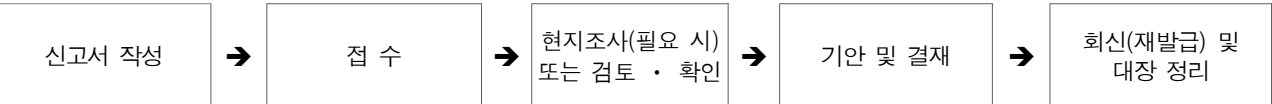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국가기술표준원장  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 
·구청장      귀하

|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첨부서류 |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| 수수료<br>없음 |
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
처리절차



신고인      처리기관: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계량업무 담당부서)

비고: 「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9조제3항, 제26조제3항, 제31조제2항 또는 제39조제3항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.